

문서번호	마을민주주의과-2397
결재일자	2016.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주민참여담당	마을민주주의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양근	박해열	한재현	이용식	김병환	04/20 김영배
협 조		정무보좌관 마을기획담당 윤정배 임정선 			

2016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2016. 4.

기 획 경 제 국
(마을민주주의과)

〈 목 차 〉

I. 추진근거	1
II. 추진방향	1
II. 추진성과	2
IV.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V. 운영개요	5
VI. 세부추진계획		
1.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9
2.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심사	10
3. 주민참여예산 총회 (주민투표)	15
4. 타운홀미팅 (최종결정)	16
5.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17
6.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18
7. 교육 및 홍보	20
8. 향후 일정	21
VIII. 행정사항	22

- 주민이 직접 꾸리는 성북 살림살이 -

2016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그간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추첨제 민주주의 방식을 확대 도입하는 등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성·대표성을 강화한 보다 성숙한 마을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함

I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II 추진 방향

- (마을민주주의 구체적 구현) 마을의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해 가는 민주적 질서체계와 의사결정 구조 구축
⇒ 성북구 인구의 **3% 이상**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여 중요한 정책결정을 보다 많은 주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함
- (추첨제 민주주의 방식 확산) 참여예산위원 위촉시 '무작위 추출' 방식을 도입하는 등 '추첨제 민주주의 방식' 도입 확대
⇒ 주민참여예산제 전반에 '추첨제' 도입하여 민주성·대표성 증대
- (작은 모임들의 활성화) 생활상의 필요한 사업을 내 이웃과 소소하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동네회의 개최 강화

Ⅲ

추진 성과

① 마을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 주민참여의 질적 향상·양적 확대로 마을민주주의 기반 조성
 - (질적향상) 주민총회에 타운홀미팅 방식을 도입하고 이 중 50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여 '추첨민주주의 방식' 도입
 - (양적확대) 13,776명 (주민의 3.4%)이 투표 참여, 어느 때보다 많은 주민이 정책결정권한 행사
- 동단위 권한을 확대하여 동단위에서 보다 많은 주민이 실질적으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주적 절차 강화
 - (민주주의의 진화)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과 토론을 통하여 사업으로 반영하도록 참여예산제 전과정에 주민 참여하도록 개선
 - (동별 마을총회 실시)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참여예산에 대한 관심도 제고

② 전국 최초 '무작위추출' 조례에 규정하여 보다 많은 주민참여 보장

- (위원 위촉 방법의 민주성 증대) 위원 모집시 공개모집 외에 무작위 추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보다 다양한 주민이 활동할 수 있게 함

③ 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시 민주성·대표성 확보

- 동별 인구수에 맞는 위원 배분, 공개모집·추첨을 통한 위원 선정
-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사회적약자 적극 영입
 - 여성의 참여율 58.3%로 어느 위원회보다 여성의 참여가 높음
 - 사회적약자 참여율 27.6%(장애인:3명 어르신:9명, 청소년: 1명)

④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편성

- 우리구 : 57개 사업, 845,670천원 편성
- 서울시 : 26개 사업, 2,684,400천원 확보 (4년 누적 자치구 1위)

1. 운영상의 문제점

① 동단위 결정금액이 2천만원으로 동일하여 동별 여건에 따라 사업물량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동에도 동일한 예산이 배정, 예산낭비 발생요인 상존

⇒ 동별 상황에 따라 시급하고 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곳에 좀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하는 방향으로 조정

② 제안사업의 검토기간이 10일로 짧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드백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아 사업부서 검토의견에 대한 주민들의 환류과정(이의신청, 재검토 요청 등) 부족

⇒ 부서 검토의견에 대한 환류과정(이의신청 기간)을 도입하여 사업제안단계부터 밀도 있는 사업 검토 시행

③ 동별 마을총회 일정이 제각각으로 진행되어 참여예산총회의 홍보가 어려워 결과적으로 주민의 참여 저조

⇒ 동단위·구단위 사업의 투표를 모두 동일하게 M보팅에서 실시하여 주민참여예산 총회의 주민참여도 3% 이상 달성토록 유도

④ 동마을심사단의 경우 총회 상정을 위한 심사만 하고 별도의 역할이 없어 결과적으로 일회성으로 운영되는 문제점 노출

⇒ 동마을심사단 위원의 임기를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부여하고 주민참여예산 총회에 상정하는 역할 외에 최종 결정된 사업까지 직접 모니터링하는 역할 부여

2. 주요 개선사항

① 사업규모 확대 (9억원 → **12억원**)

⇒ 동단위 6억, 구단위 6억 결정한도액 전년대비 3억원 증액하여 주민이 필요로 한 사업의 예산 반영 증대

○ 동단위사업: 2015년 4억원 → 2016년 6억원 ± α

- 동별 최대 3천만원 이내

○ 구단위사업: 2015년 5억원 → 2016년 6억원 기준으로 진행

※ 동단위사업 결정액에 따라 구단위사업 최종 결정액은 달라질 수 있음

구 분	동단위사업	구단위사업
개 념	한 개동에 해당하는 사업	두 개동 이상에 해당하거나 사업비가 2천만원이 초과되는 사업
특 징	소규모 근린생활개선사업	광역사업, 정책제안제
기준액	사업비가 2천만원 이하	사업비 2천만원 초과

② 동단위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시행

⇒ 작은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사업의 제안을 유도하고 해당지역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역의 주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함

○ 동단위사업 기준액 상향 조정: 1천5백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마을심사단 성립 요건 변경: 심사건수 5건 → **심사건수 4건 이상**

- (기존) 재적 과반수의 위원이 출석하고 심사 대상 건수가 5건 이상인 경우에 마을심사단 성립함

- (변경) 심사대상 건수가 4건 이상인 경우에 마을심사단 성립

○ 동별 결정한도액 최대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 2015년 2천만원 → 2016년 제안 수에 따라 결정금액 차등

▶ 동별 최종 배정액 = 마을심사단이 총회에 상정한 예산 총액의 **80%**

③ 평가결과 반영 사항 변경: 차등배분 → 인센티브 지급

⇒ 동별 예산 차등 배분보다 우수동에 인센티브 지급이 보다 효과적

④ 운영일정 조정

○ 주민참여예산총회 일정: 10월 → 9월

⇒ 동 행사가 집중적으로 시행되는 10월을 피하여 한 달 먼저 시행하여 주민참여예산총회를 안정적으로 진행하도록 함

○ 사업제안, 심사과정을 서울시의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성북구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하여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주민이 보다 더 용이하게 참여하기 위함

○ 동단위 사업 투표 후 구단위 사업 투표 완료

⇒ 한정된 결정금액(12억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

○ 제안접수와 부서검토의 상시화 (제안사업의 즉각적인 피드백)

⇒ 검토기간이 10일 정도로 짧아 세밀한 사업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함

⑤ 동마을심사단 운영 내실화

○ 동단위 주민참여예산사업은 마을심사단에서 직접 모니터링 실시

⇒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직접 마을의 결정사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의 제안대로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관리

○ 마을심사단 임기제 도입: 1년, 1회 연임 가능

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내실화

○ 주민참여예산위원 공개모집 이외에 무작위 추출 방식 도입

○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먼저 운영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

○ 위원 자격 기준 강화: 출석률이 50% 이하 위원 해촉

- 연임기준: 출석률 50% 이상 위원만을 대상으로 함

① 운영규모: 12억원

○ 구단위사업과 동단위사업으로 이원화 운영

- 동단위사업 (약 6억원): 한 개동에 해당하고 사업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구단위사업 (약 6억원): 두 개동 이상에 해당하거나 한 개동에 해당하더라도 사업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 동별 3천만원 이내, 최종결정액금액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② 주민제안: 동네회의, 일반(상시)제안

- 동네회의: 동별 인적네트워크, 공간네트워크 회의에서 마을에 필요한 사업 제안
 - 일반(상시)제안: 소규모 동네회의에 참여가 어려운 주민들은 인터넷, 우편, 이메일로 신청
- ※ 수시로 홈페이지나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사업은 사업부서 검토 후 동단위·구단위 사업 분류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일정에 따라 진행

③ 주민심사 (주민총회 상정)

○ 동단위사업: 마을심사단에서 결정

- 심사대상: 마을담당관에서 분류한 동단위사업 일체
- 성립요건: 마을심사단 정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심사대상건수가 4건 이상일 때 개최할 수 있음
- 심사결정: 마을심사단은 총회에 상정할 사업이 3건 이상 5건 이내일 경우에만 최종 심사 결정 가능
- 심사절차: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 (붙임 #6)

○ 구단위사업: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

- 대 상: 마을담당관에서 분류한 구단위사업 일체
- 방 법: 4개 분과로 분류, 분과별 현장심사 후 분과별 상정사업 결정
- 기 준: '사업비 비중'으로 결정 (각 분과별 사업비 ÷ 전체사업비)
- 분과별 상정 한도액: **최종 결정금액의 1.5배**

◆ 결정 예시				
구 분	도시·환경	복지·경제	교육·문화	건강·안전
적격사업 (20억)	8억(40%)	3억(15%)	4억(20%)	5억(25%)
상정실링 (9억)	3억 6천만	1억3천5백	1억 8천	2억2천5백
결정금액 (6억)	<6억>			

- ※ 제안사업 규모에 따라 상정실링액, 최종 결정금액 변동 가능
- ※ 총회는 4개 분과별·정책제안제 구분 없이 6억 범위 내 투표

4 주민결정(주민참여예산 총회)

- 투표수: **총 5표 (구단위 3표, 동단위 2표)** ※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투표방법: **M보팅**에서 구단위·동단위 동시 투표
- 득표 동점사업 처리기준
 - 동점 득표사업은 사업비가 작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 분과당 결정실링액에 걸치는 마지막 사업은 결정실링액을 기준으로 초과된 사업비가 50% 미만은 선정하고, 50% 이상은 제외
 - 선정된 마지막 사업과 득표 동점이면서 사업비가 같은 사업은 선정
- 허용기준
 - 동단위사업: 동별 결정금액의 +3% 이내
 - 구단위사업: 6억원 기준으로 동단위사업 결정 후 잔여 금액은 구단위에 추가하고 부족 금액은 그만큼 감액

5 주민총회 참여인원 목표: **15,000명 이상** 참여

○ 성북구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인구의 **3.75%**

6 운영절차

○ 주민참여예산 (12개동)



○ 마을계획 개최(8개동): 자체계획에 의거 추진

1.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① 운영개요

- 의의: “참여의 재미를 부여하자!”, “참여하면 더 잘 참여한다!”
 - (효능감 제공) 주민들이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마을모임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참여예산사업으로 제출하여 실제 주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효능감을 제공하고자 함
 - (참여에서 자치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지역의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
 - (상시제안 접수) 참신하고 우수한 사업 구정에 반영
- 제안창구: 동네회의, 일반(상시)제안
- 접수기간
 - 동네회의: 2016. 5. 1. ~ 6. 30. (집중접수)
 - 일반제안: 연중 접수하나 집중접수 기간이 지나면 다음연도로 이월

② 동네회의 개최

- 주 관: 주민참여예산 담당 및 마을코디
- 역 할: 생활상의 필요한 사업을 동네회의에서 주민 스스로 찾기
 - 3~5명 정도의 소규모 단위인 “자발적 결사체”의 활발한 활동이 마을민주주의의 기반 조성에 핵심임
- 구 성: 공간네트워크(통단위 5명 이상), 인적네트워크(3명 이상)
- 요 건: 3명 이상의 연서가 첨부된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서 제출

③ 일반제안 접수

- 기 간: 5. 1. ~ 6. 30. (집중접수)
- 주 체: 마을담당관
- 목 적: 생업이나 일신상의 이유로 동네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함
- 방 법: 인터넷(구청일괄), 방문 접수(구청·동), 우편, 팩스 등
- 역 할
 - 마을담당관 : 공고, 홍보, 인터넷 접수 총괄
 - 동마을복지센터 : 방문 접수분 제출, 제안서 작성 행정지원
- 요 건: 5명 이상의 연서가 첨부된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서 제출
- 유의사항
 - (서류접수) 동단위, 구단위 구분하지 않고 요건을 갖추면 모두 접수
 - (행정지원) 제안서 작성이 어려운 주민을 위하여 행정 지원
 - (서류검토, 보완요구) 필수사항의 기재가 누락되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하고 일정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제안접수 반려

2.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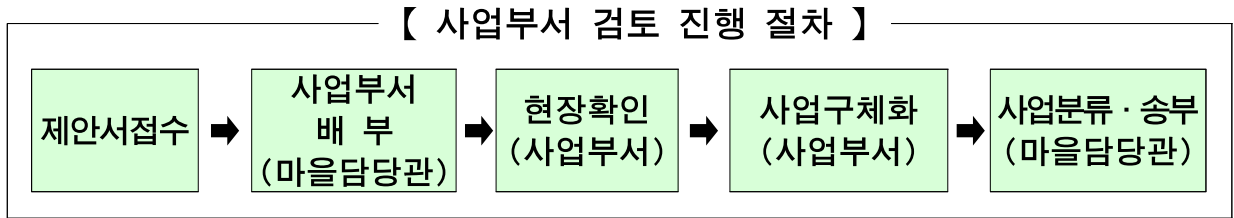
① 운영방향

- 사업의 시급성, 적절성 등을 주민 입장에서 검토
- 현장방문 후 밀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총회 상정사업 결정

② 제안사업의 구체화 및 타당성 검토: 사업부서

- 개 요
 - 기 간 : 2016. 7. 11. ~ 7. 22.
 - 역 할 : 현장 확인, 법령 예산 등 사업성 검토, 사업 구체화

- 절 차



○ 세부내용

- (사업부서 배부) 마을담당관은 접수된 사업을 분류하여 각 부서에 전달
 - (현장확인) 사업부서는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법률·예산·민원 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 (사업 구체화) 사업부서는 사업의 규모, 설계의 적정성, 사업비 등의 조정이 필요하면 제안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구체화
- ※ 사업을 검토한 부서는 최종 선정시 다음연도에 사업을 직접 추진

○ 부적격 심사기준

가. 제반 법령에 저촉되어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사업

나. 개인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 공공성이 높은 지역으로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사업은 가능

다.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기타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등

라.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예) 매년 운영비가 지원되는 시설에 운영비를 신청하는 경우

마. CCTV 설치 요구 사업

- 자치행정과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참여예산 사업으로 포함하지 않고 자치행정과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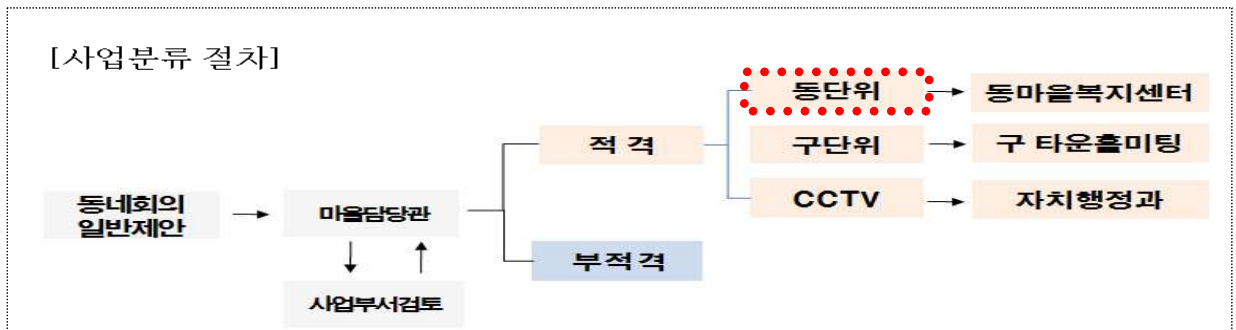
바.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제안 (민간이전 불가)

- 주민참여예산사업은 공모사업과 달리 부서에서 예산으로 편성하여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며 특정 단체에 예산에 지원되지 않음

○ 주의사항

- (제반사항 검토)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공공성, 수혜대상, 사업범위, 규모, 산출내역,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협의진행) 타부서와 협의,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필히 협의하여 진행하고 각기 해당 부서에서 가능·불가능한 사항을 빠짐없이 검토할 것
- (정확한 정보 제공) 사업부서는 주민심사과정에서 사업심의시 효율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사업을 충분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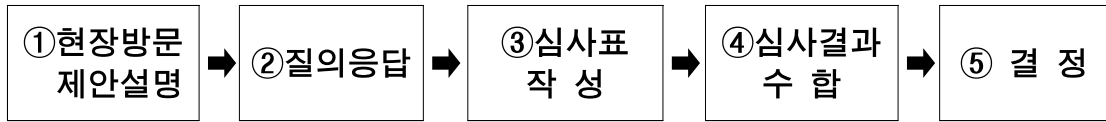
○ 사업 분류



③ 동단위사업 심사: 마을심사단

- 역할: 주민총회에 상정할 동단위사업 결정 (우선순위 포함)
- 임 기: 1년, 1회에 한하여 연임
- 정 원: 동별 20명 이상 (제안자 별도)
- 심사대상: 마을담당관에서 송부한 동단위사업 일체
- 심사기간: 16. 8. 8. ~ 8. 19. (기간내 실시)
- 성립요건: 재적 과반수 위원이 출석하고 심사 대상 건수가 4건 이상
 - ※ 주민참여예산위원 임기 준용, 위촉한 날로부터 시작
- 결정요건: 총회에 상정할 사업이 3건 이상 5건 이내일 경우에만 심사결정 가능
- 심사방법: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 (심사점수로 판단)

○ 심사절차



- (제안설명) 제안설명이 필요한 사업일 경우 제안자가 마을심사단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들에게 제안사업 설명

판단 기준

- ◆ 제안자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는 제안설명 기회 보장
- ◆ 단순 토목공사(계단·도로보수, 핸드레일 설치 등) 제안설명 제외
- ◆ 사업구역의 위치, 행정데이터, 기타 현황 등 대체 설명 가능한 사업일 경우 제외

- (질의·응답) 마을심사단은 사업제안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음
 - (심사표작성) 심사기준표에 의거 평가
 - (심사결과 수합) 마을코디는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결과 공개
 - (찬반토론 및 결정) 5순위가 동일점수로 2개 이상 사업이 있으면 위원들간 토론 후 거수에 의하여 결정함
- ※ 5순위가 넘어간 사업은 마을총회에 상정하지 않음

○ 주민자치위원회 추인: ~주민참여예산총회 개최 20일 전

○ 동별실링액 = 심사대상 총액의 **80%** (동별 차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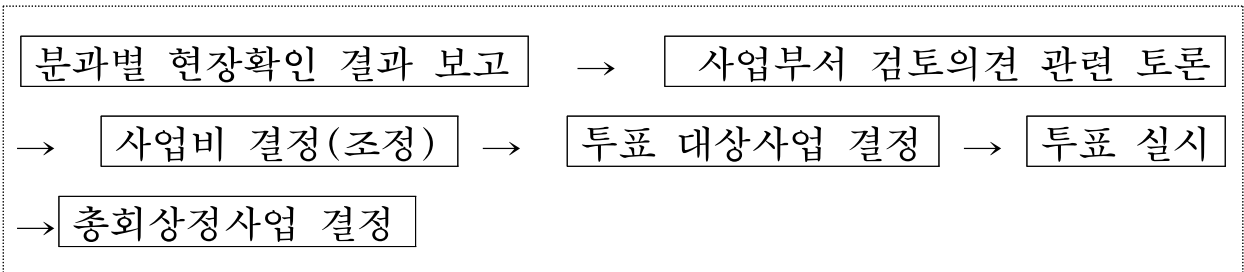
- ◆ 총회상정 총액이 3,750만원 → 실링액 3000만원
- ◆ 총회상정 총액이 2,500만원 → 실링액 2000만원
- ◆ 총회상정 총액이 2,000만원 → 실링액 1600만원
- ◆ 총회상정 총액이 1,500만원 → 실링액 1200만원
- ◆ 총회상정 총액이 2,560만원 → 실링액 2048만원 → 최종 2100만원
- ◆ 총회상정 총액이 1,940만원 → 실링액 1522만원 → 최종 1500만원
- ◆ 총회상정 총액이 2,256만원 → 실링액 1804.8만원 → 최종 1800만원

※ 십만원 이하 아래에서 반올림

④ 구단위사업 심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역 할: 주민총회에 상정할 구단위사업 결정 (우선순위 포함)

○ 절 차



○ 일 정

- 현장확인 및 상정결정 안내를 위한 전체회의 : 16. 8. 9.(화)
- 분과별 현장 방문 : 16. 8. 10.(수) ~ 8. 16.(화)
- 현장 방문 사업검토보고서 작성 제출 : 16. 8. 16. (화)
- 주민총회 상정사업 결정을 위한 전체회의 : 16. 8. 19.(금)

○ 대 상: 마을담당관에서 분류한 구단위사업 일체

○ 방 법: 4개 분과로 분류, 분과별 현장심사 후 분과별 상정사업 결정

- 기 준: '사업비 비중'으로 결정 (각 분과별 사업비 ÷ 전체사업비)

○ 분과별 상정 한도액: 최종 결정금액의 1.5배 (서울시 기준)

◆ 결정 예시				
구 분	도시·환경	복지·경제	교육·문화	건강·안전
적격사업 (20억)	8억(40%)	3억(15%)	4억(20%)	5억(25%)
상정실링 (9억)	3억 6천만	1억3천5백	1억 8천	2억2천5백
결정금액 (6억)	<6억>			

※ 제안사업 규모에 따라 상정실링액, 최종 결정금액 변동 가능

※ 총회는 4개 분과별·정책제안제 구분 없이 6억 범위 내 투표

3. 주민참여예산 총회 (주민투표)

① 운영 방향

- 동단위·구단위 사업 동시 투표 (동단위 2표, 구단위 3표)
- 주민참여예산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② 세부 내용

- 투표기간: 2016. 9. 8.(목) ~ 9. 27.(화)
- 투표방법: PC와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M보팅 투표**
- 투표대상: 동단위사업, 구단위사업(정책제안제 포함) 모두
 - 거주지 동 선택 2표 → 성북구 선택하여 3표 투표 → 인증 → 종료
- 사업선정: 결정 한도액내 득표 순위로 사업 선정
- 투표 수: **5표** (동단위 2표, 구단위 3표)
 - 동단위사업 투표대상: 5건 이내 조정
 - 구단위사업 투표대상: 20건 이내로 가급적 조정

③ 주요 변경사항

- 구단위사업 분과위 30% 이상 찬성 규칙 적용
 - 2015년은 분과당 상정실링액 기준으로 사업내용이 좋다고 판단되지 않음에도 상정실링액의 여유가 있어 그냥 총회에 상정되었으나,
 - 2016년부터는 분과위원회 심사결과 30% 이상 찬성을 받지 못한 사업은 상정실링액 한도가 넘지 않아도 총회에 상정하지 않음
- ⇒ 총회에 너무 많은 사업이 상정될 경우 사업을 결정하는 주민들이 제대로 된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
- 동단위·구단위 투표 동시 실시
 - 9. 8. ~ 9. 27. : 주민참여예산총회 주간으로 전동 동시 실시

4. 타운홀미팅 (최종 결정)

1 운영 방향

- 현장·인터넷·모바일투표 방식 도입 및 투표기간의 연장으로 주민참여율 제고
 - 주민참여예산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 동단위사업 결정(9.27.) 후 구단위 사업의 최종 선정은 타운홀미팅(9.28.)에서 확정
- ⇒ 사업선정: 온라인투표(50%) + 타운홀미팅 현장 투표(50%)

2 추진 내용

- 일 시: 2016. 9. 28.(수) 15:00 ~ 18:00
- 장 소: 구청 4층 성북아트홀
- 참 가 자: 100명 (참여예산위원, 동마을심사단, 무작위추출)
 - 무작위추출로 50명 선발
 - 주민참여예산위원 30명, 동마을심사단 20명 선정

○ 진행내용

세션	주요 내용	비고
식전	■ 사진전시회, 사업 안내 판넬, 배너 전시	
개회	■ 개회사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축사 (구청장)	
안내	■ 진행과정, 기기 사용, 투표 방법 안내	진행자
제안설명 ↓ 토론 ↓ 결정	■ 토론프로세스 ① 제안자 사업 설명 ② 질의, 토론 ③ 제안설명, 토론 후 투표	
공지	■ 최종 결정 내역 화면 게시	
소감발표	■ 체험 소감 공유 (타운홀 미팅 참가자)	
폐회	■ 총평 (구청장)	

③ 주요 변경 사항

○ 투표 결과 공표 프로그램 제작

- 투표 종료 후 5분 이내 발표할 수 있도록 공표 프로그램 사전 제작
⇒ 참여의 재미를 부여하고 즉시 공표하여 정책신뢰감 부여

○ 타운홀미팅에서 최종 결정 사항 확정

- 동단위사업을 먼저 결정(9.28.)한 후 구단위사업은 타운홀미팅에서 최종 결정(9.29.)

5.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 목 적

- 참여예산은 주민 제안사업의 반영뿐 아니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통한 예산낭비 방지 및 예산절감 실현
- 선정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못지않게 선정 이후의 엄격한 관리 중요

○ 대상사업: 20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57개 사업

○ 모니터링단 구성: 주민참여예산위원

- 모니터링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업별로 2~3명 전담제 운영
- 참여예산위원 사전설명 시 사업모니터링 커리큘럼 추가하여 교육 실시

○ 모니터링 실시

- 기 간: 상·하반기 각 1회 모니터링 실시(5월, 9월)
- 내 용: 주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과다설계, 절차의 중복, 관련기관간 협의 미비로 일부 공정 중복 시행 등 예산낭비 요소 또는 예산절감 가능 여부 모니터링
- 협 조: 사업주관부서는 모니터링요원이 요청하는 사업계획, 추진현황 등 관련자료 제공 협조
- 방 법: 사업현장, 사업부서 등을 **공개적으로** 방문, 예산집행 상황 점검

○ 사업부서 관리카드 작성 제출: 분기별 1회

○ 주요 확인사항

- (집행 타당성) 당초 제안내용에 일치하게 추진하였는지 여부
- (사업 효과성) 지역주민의 만족도, 민원발생 사항 등
- (예산 적절성) 예산집행의 낭비요소가 없었는지 집행 내역 확인

○ 모니터링 결과 조치

- 분과위 위원별로(현장확인 조별) 예산낭비, 절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하여 마을담당관 제출
- 모니터링 결과는 현장확인 위원이 “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사업에 “모니터링보고서”로 첨부하여 등록
- 마을담당관은 모니터링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시 사업 주관 부서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

6.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 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은 기 수립한 마을담당관-9000호에 의함

○ 임원진 구성

- 위원장·부위원장: 총회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
- 4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회의 진행 하에 선정

○ 회의 운영

- 개최시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에 의해 개최
- 개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사전공유 : 회의개최 1주 전 안건 및 회의자료 전달
- 회의공개 : 회의종료 7일 이내에 회의결과 공개

○ 운영 원칙

-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
-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② 전체 위원회(전체회의) 운영

○ 개최횟수 : 연 5회 내외

○ 주요기능

- 2016년 주민참여예산 운영방안 및 방법 모색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제출사업 선정 논의
-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주민총회 상정사업 결정 등
- 20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실시

③ 분과위원회(분과회의) 운영

○ 분과구성 : 4개 분과(건강안전, 교육문화, 복지경제, 도시환경)

○ 회의소집 및 의결

- 회의소집 : 분과위원장이 필요시, 총회 요구 시 소집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개최횟수 : 연 6회 내외

○ 주요기능

- 분과위원회별 자체 정례회의 개최를 통한 의제 발굴
- 일반제안, 지역(동네)회의, 분과위원회 제안사업 부서 검토결과 등을 토대로 주민총회 상정사업 선정
- 분과위원회별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실시 등

7. 교육 및 홍보

①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참가대상 : 일반주민, 주민참여예산위원
- 교육장소 : 구청 4층 성북아트홀
- 소요예산 : 10,000천원

1) 기본과정

- 운영기간: 1.22.~28. / 2.18.~25. 19시~21시 / 2주 3회
- 참가대상: 주민참여예산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 운영방법: 전문가 강의 및 모둠활동 등

2) 심화과정

- 운영기간: 2016년 4월경
- 참가대상: 주민참여예산위원
- 운영방법: 전문가 강의 및 토론, 모둠활동 등

②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숍 실시

- 시 기: 2016. 4월, 10월
- 대 상: 주민참여예산위원
- 내 용: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 및 피드백

③ 주민참여예산 홍보

- 월별 홍보 계획

월 별	홍보내용	홍보방법
1월	▶ 주민참여예산학교 수강생 모집	▶ 구 홈페이지·성북소리 게재 ▶ 구 웹진, SNS 홍보 ▶ 포스터 게재, 전단지 배포 ▶ 동 직능단체 회의 홍보, 언론 보도자료 제공 등
2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3월~5월	▶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접수 홍보 ▶ 동네 회의(지역회의) 운영 홍보	
6월~7월	▶ 동별 마을심사단 모집 홍보	
8월~9월	▶ 주민참여예산 총회 홍보	

8. 향후 추진 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비 고
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 성	3. 7.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 임원진, 분과위원회 구성	
② 주 민 참 여 예 산 제 운 영	사 업 제 안	5. 1. ~ 6. 30.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접수 (성북구·서울시)
	사 업 검 토 피 드 백 (이의신청)	7.11.~ 7. 22.	부서 검토 및 사업구체화
		7.25.~ 7. 29.	부서검토결과 피드백(이의신청)
	사 업 분 류	8. 1. ~ 8. 5.	사업분류·조정기간 (마을담당관)
	사 업 심 사	8. 8. ~ 8. 19.	총회상정사업 결정 (동단위)마을심사단 (구단위)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 민 총 회 홍 보 자 료	8. 22. ~ 8. 31.	동단위·구단위 주민참여예산총회 홍보 준비
	온라인투표 준 비	9. 4. ~ 9. 6.	M보팅 프로그램 셋팅, 투표 시험
		9. 7.	M보팅 최종 예비 모의시험
	온라인투표	9. 8. ~ 9. 27.	온라인투표 실시
		9. 27.	동단위 주민참여예산사업 결과 공고
	타운홀미팅 준 비	8. 22. ~ 8. 31.	홍보 준비, 타운홀미팅 책자 만들기
		9. 1. ~ 9. 15.	타운홀미팅 참가자 모집(무작위추출)
		~9. 25.	타운홀미팅 최종발표 프로그램 제작완료
	타운홀미팅	9. 28.	타운홀미팅 실시, 최종 결과 발표
9. 29.		최종 결과 공고	
③ 예 산 편 성	~10. 30.	부서 예산 편성 확인, 구의회 제출	
④ 모 니 터 링 실 시	~ 3.31	사업시행 관련 사업계획서 제출	
	~6.30	사업관리카드 제출 (예산집행현황)	
	~9.30	사업관리카드 및 진행상황 파악	
	~11.30	현장점검, 최종 진행상황 모니터링	
⑤ 평 가	11월~12월	제도 개선 사항 의견 수렴, 설문조사 실시	

VII 행정 사항

1 부서별 협조사항

주요 내용	협조부서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동네회의 운영 및 주민제안사업 제출 (5~6월)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마을심사단 운영 (8월)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주민총회 행사 협조 (9월) </div> </div>	전 동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사업설명서 작성 (5~6월)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참석 및 검토의견 제공 등 (7월~8월) </div> </div>	사업부서
홈페이지 및 소식지 게재, 행사 동영상 촬영, 온라인 투표 협조 (연중)	홍보담당관

2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 개최 및 매뉴얼 별도 제작 배부

- 주민참여예산제 주요 변경사항 직원 교육 실시 2016. 4월
- 매뉴얼 제작· 배부 2016. 4월

3 주민참여예산 총회 운영 계획 별도 수립 : 6월 한

4 M보팅 사용 환경 서울시 정보기획관과 협의: 6월 한

- 붙임 : 1.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1부
2. 사업부서 검토서식 1부
3. 부서검토의견 체크리스트 1부
4. 마을심사단 심사기준표 1부
5. 모니터링 결과 보고 서식 1부
6. 관리카드 서식 1부. 끝.

〈붙임 1〉 주민 제안사업 신청서

주민 제안사업 신청서		
◆ 구 분	<input type="checkbox"/> 일반제안 <input type="checkbox"/> 주제공모 (아동·청소년)	
◆ 제안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단체명)	주 소	연 락 처
◆ 제안사업		
사 업 명		
사업위치		
제안사업 내 용		
필 요 성 기대효과		
소요예산		

◆ 사업명 :

사업위치도

현황사진

〈붙임 2〉 사업부서 검토 서식

부서 검토 의견

◆ 제안자 No.				
성 명		전 화		
주 소		E-mail		
◆ 주민 제안사업 내용				
사업명		소요예산	000백만원	
위 치				
제안사업 내 용				
제안취지				
◆ 사업부서 검토의견				
사업개요				
소요예산	백만원	사업기간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 당 () 해 당없음 ()	※ 저촉사유 :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 당 () 해 당없음 ()	※ 부적격사유 :		
사업성평가 (타당성, 시급성, 사업효과, 수혜범위 등)				
종합검토결과	적 정 ()	부적정 ()		
검 토 기 관	기관명	검 토 자	확인자(부서장)	(서명)
	부서명		작성자 : 팀장	담당 (☎)

현황도 : 필요시 첨부

사 업 위 치 도

현 황 사 진

〈서식 3〉 부서 검토 의견 체크리스트

부서 검토의견 체크리스트

검 토 사 항	체 크
1. 제안자의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2. 제반 법령을 충분하게 검토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3.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4. 소요예산은 정확하게 산출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5. 사업성평가를 주민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하게 기술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6. 부서 소관사항에 해당합니까?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7. 부서 소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상세하게 작성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8. 종합검토결과 부적정으로 판단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9. 팀장, 과장의 검토를 받았습니까?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10. 전체적으로 주민입장에서 주민의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붙임 4〉 마을심사단 심사기준표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표

○ 사업명 : _____

○ 심사자 : _____

〈 평가표 〉

항 목	평가지표	배점					점수
		1	2	3	4	5	
필요성	이 사업은 주민편의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시급성	이 사업은 내년에 바로 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공공성	이 사업은 공익목적 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사업 범위	이 사업은 성북구 전체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 (특정지역 수혜 여부)	그렇지 않다					그렇다
수혜 대상	이 사업은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삶의 질	이 사업은 서울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사업비 규모	이 사업의 경우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드는 사업비가 적당한 규모입니까? (사업비 과다 여부)	그렇지 않다					그렇다
	계						

<붙임 5>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2016년 주민참여예산 -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분과명 : OO 분과

대상사업		참여위원	
사업명		위원명	
위치		현장조사 일시	
현장조사 의견	(사업계획 대비 진행여부, 하자 발생여부, 지역주민 만족도, 사후관리상태, 기타의견 등에 대한 현장조사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붙임 6> 사업집행 관리카드 서식

사 업 명:

사업개요

(부서 : 0000, 담당자 : 000, 연락처 : 0000)

- 위 치 : 동소문로32길4~8
- 사업기간 : 2016.3 ~ 12
- 사 업 비 : 50,000천원
- 사업내용 : 도로 급경사 조정

사업필요성

-
-

추진실적 (예시)

(단위 : 천원)

기 간	추진내용	집행액	비고
2016. 3. 03.	사업추진 계획 수립	-	
2016. 4. 17.	사업시행 계획 수립	-	
2016. 4. 22.	웬스 조달 구매	-	

사업효과

- 경사로를 조정하여 주민에게 교통편의 및 보행편의 제공
-

현장사진

시 행 전

시 행 후 (시행중)

 문제점 및 대책

○

 향후계획

○

주민 면담록

주민이름	일시	방법	내 용(간략하게)
○○○	16.○.○○	방문	주민참여예산위원 방문, 간단한 질의응답 등